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 타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계룡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복지문화과장
2. 계룡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또는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과장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담당

②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